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특례 신설 등〉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40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 특례 신설	3
2. 국방기술품질원에 국유·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 신설	7
3. 국방기술품질원에 영구시설물의 축조 특례 신설	12
4.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	15
※ 참고자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관련 조문	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9. 20.
3. 회부연월일: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 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양여 외에도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 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 특례 신설

-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32조의2(군수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 -----.

- ☐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¹⁾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²⁾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도 동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됨.³⁾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 이에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 품질보증 및 시험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유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⁴⁾

□ 다만,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4)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군수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7조⁵⁾에서도 국가의 부담을 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되고,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은 지방자치사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양여는 다른 기관·단체·주민·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관리,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도 무기체계의 시험·인증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국·공유지 및 관련 시설물의 무상 사용허가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5)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국방기술품질원에 국유·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 신설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및 대부 기간을 20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신설＞	제32조의2(군수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 현행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1년부터 20년 이내로 각각 제한하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사용허가 등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6)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갱신을 위한 주기적인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및 대부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 및 대부를 허용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⁷⁾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를 정해야
하며, 다른 법률로 [별표]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을 개정하여 그 특례 내용을 반영해야 함.

그런데, 현행 [별표]는 「방위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만 규정하고 있고, 장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⁸⁾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장기 사용허가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장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205. 「방위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139호)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중임.⁹⁾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특정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장기 사용 허가 등은 다른 기관·단체·주민·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반면, 국방부는 국방기술품질원 역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국·공유지 및 관련 시설물의 장기 사용과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특례가 필요하고,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대부를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 또한 다수 존재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76	「방위사업법」 제32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29. 12.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상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입법례]

연 번	법 령	대 상	기 간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원, 외국투자기관	50년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50년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자	50년
4	연구개발 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	50년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업	50년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20년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0년

3. 국방기술품질원에 영구시설물의 축조 특례 신설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32조의2(군수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 한 특례)
<신 설>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 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 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 현행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부나 사용 종료 후 철거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¹⁰⁾

10)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30., 2016. 3. 2., 2020. 3. 31.>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5.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 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반환으로 인한 국유 재산이나 공유재산 고유의 공공목적 수행에의 장애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특정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등은 다른 기관·단체·주민·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반면, 국방부는 정책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들이 많고,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의 시험·

-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인증 등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공유지 및 관련 시설물의 안정적 사용이 필요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에 동의하는 입장임.¹¹⁾

4.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행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3(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 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²⁾

국방기술품질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나목에 해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¹³⁾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① 국방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②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 시설을

1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등을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체하는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음.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 등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신속한 품질보증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2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되고 있음.¹⁴⁾

- 이에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되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

14)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2(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이 의제되고, 동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승인 및 통보가 있으면 건축허가·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등¹⁵⁾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사항 등]

-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권한부여(제5조)
-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의제(제7조)
-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통보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협의로 의제(제8조)
-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특례(제9조)
- 타인의 토지에 출입 가능(제11조)

□ 국방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 인·허가 의제 및 협의 간주 등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15) 참고자료 첨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관련 조문

※ 참고자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관련 조문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6. 3. 29., 2017. 1. 17., 2020. 1. 29., 2020. 3. 31., 2024. 1. 16., 2024. 1. 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23.>
-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

대수선·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4. 1. 1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고”라 한다)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24. 1. 16.>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등을 한다. <개정 2024. 1. 16.>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4. 1. 16.>